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91호  
2025. 1. 24.

- 국토부, 2025년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
- 산업연관표로 본 2020~2022년 건설업생산비용구조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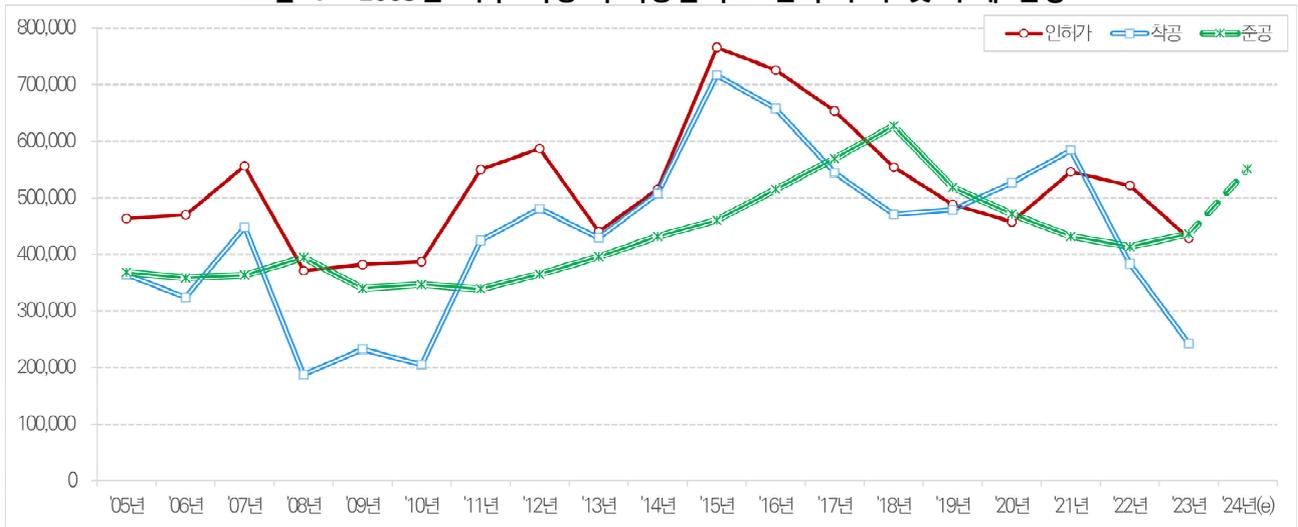
# 국토부, 2025년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

-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25.2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 예정 -

## 2021년 이후 주택 공급지표 감소에 따라 향후 공급 부족 우려 점증

-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감소세 지속
  -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직전 고점(58만 3,737호)을 기록한 후 2023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2024년에도 감소 추세임(2024년 11월 누적 실적 기준 전년 대비 17.6% 감소).
- 착공 물량은 2024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늘어났지만 지난 10년 평균에는 못 미쳐
  - 2024년 11월 누적 주택 착공 물량(23만 9,894호)은 2023년 11월 대비 21.4% 증가했으나 2014~2023년 각 년도 11월 누적 물량과 비교하면 55.2% 수준임.
  - 일반적으로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평균 3년 내지 3.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부터 나타난 착공 물량 감소 영향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준공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 있음.

<그림 1> 2005년 이후 각종 주택공급지표 변화 추이 및 추세 연장



주 : 2024년 준공물량은 착공과 준공사이의 시차(3년)를 감안해 연장한 것임.  
 자료 : 국토교통부(2025)

- 선행지표 감소로 2025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은 전년 대비 20.6%가량 감소 전망
  - 2024년 입주 물량은 36만 4,058호(부동산114, 2025)였던 반면, 2025년 입주 물량은 28만 9,244호로 예상돼(한국부동산원·부동산114, 2024) 약 20.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공급 부족 우려에 정부는 공공을 필두로 민간과 함께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총력**

- 공공부문에서는 2025년 공공주택 25.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공공택지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 예정
  -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정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외에도 지방을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함.
- 한편 민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0조원의 공적보증을 추가하고 정비사업 기준 및 요건 등을 개선하여 공급 활성화를 도모
  - 그 외 지자체별 부동산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부과됐던 선분양 제한 기간을 단축할 계획임.

**<표 1>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목표 기간별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구분	공공주택 공급 및 사업 지원 방안	민간주택 공급 및 사업 지원 방안
단기	- 2024년~2025년 LH 매입약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급(2024년 旣 약정체결 물량 4.2만호는 2025년 상반기 중 착공 목표) -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0만 호, 착공 7.4만호 계획(인허가착공 계획 물량 중 상반기 20% 완료) - 전세임대 4.5만호 공급 - 중심제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 기준 조정, 일반관리비 상향 - 가격·공급 점검 체계 상시 가동(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관계기관 참여)	- 지자체별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 HUG의 공적 보증 30조원 이상 추가(기존 35조원 목표 + 2025년 30조원 추가) - CR리츠 보증 절차 개선 및 한도 확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LH 매입 및 임대 활용 검토 - 중소 건설사 지방 건설 현장 대상 보증료 경감(2025년 한시) - 단기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 기간 단축(6개월 이하 영업정지 시 최대 50% 단축) -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 시장 동향 밀착 모니터링
중장기	- 2.8만호 공공주택 본청약(3기 신도시 8천호 포함) - 16.6만호 공공택지 지구계획 승인(의왕·군포·안산 4.1만호 등) - 7.1만호 공공택지 지구 지정(용인이동 1.6만호, 구리 토평 1.9만호 등)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완료 - 지방 노후계획도시 연내 선도지구 지정 추진	- 재건축 진단 기준 개선(주민 거주 불편 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 반영) - 재개발 요건 개선(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5 업무계획 보도자료(2025.1.14.)를 기반으로 기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취합

**(공공) 20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 공급 예정**

- 유형별로는 ①건설형 공공주택(인허가) 14.0만호, ②매입임대 6.7만호, ③전세임대 4.5만호로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이 55.6%를 차지

- 2024년 연간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4만호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며<sup>1)</sup>, 2025년에도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 건설주택 인허가 계획(당초 목표 13.5만호에서 0.5만호 증가)
-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2024년 대비 2만호 증가한 7.4만호로 계획해 2014년~2023년 평균 7.8만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중·장기적 주택 공급 기반이 되는 공공택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7.1만호 지구 지정,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을 계획함.
  - 주요 지구 지정 예정 지역은 용인이동(1.6만호), 구리토평(1.9만호) 등이며, 지구계획 승인 예정지 중 대표적인 지역은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 등임.
  - 일반적으로 지구 지정에서부터 분양까지 5년이 소요되는 만큼<sup>2)</sup> 2025년 지구 지정된 주택지구는 2030년경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2025년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예정지구



자료 : 국토교통부 블로그(blog.naver.com/mltmkr, 2025.1.13.)

1) 2024년 연간 수치는 국토교통부의 목표치(2024. 12. 12. 발표)며, 작성일 현재(2025. 1. 20.) 2024년 11월까지의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8,161호임. 단, 연간 공공부문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이 12월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야 함.  
 2) 일례로 가장 최근에 지구계획이 승인된 공공택지지구 중 하나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10월 15일에 지구 지정된 이후 5년 만인 2024년 8월 13일 지구계획이 승인됨.

- 그 외 3기 신도시 8천 호 등 2.8만호에 달하는 공공주택 본 청약을 추진(<그림 1> 참조)
  - 3기 신도시 본 청약은 고양 창릉 1,800호, 하남 교산 1,100호, 부천 대장 2,000호, 남양주 왕숙 3,000호가 예정되어 있음(반올림한 계획 수치로서 실제 공급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민간) 중장기 공급 물량 확보를 목표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및 요건 개선 예정

-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동산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책을 마련함.
  - 기업의 자금 마련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CR리츠 보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의 LH 매입 및 임대 활용을 검토하고 HUG의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추가할 예정임.
  - 지자체별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대상 보증료 경감, 영업정지 처분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 개선·별칙 경감 등 지원책 병행
- 중·장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재건축 진단 및 재개발 요건을 개선해 민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재건축 진단은 기존 요건인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에 주민 거주 불편 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을 추가하여 주민 생활의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 재개발 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준공 30년 이상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지구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그 외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임.

## ■ 2025년 국내외 불확실성 존재, 반기별 전략 수립 필요 가능성 있어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 염두에 두고 상·하반기 독립적 전략 수립을 염두에 둬야
  - 만약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연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농후함.
  -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참고하면,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을 탄핵 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음.
  - 국토부는 상반기 공급 목표를 따로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산업 지원 정책이 지속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하반기 수정전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강달러 기조 유지 및 트럼프 체제하 미국의 산업 보호주의 등으로 인한 국내 금리인하 시점 지연과 같은 해외 발 경제적 불확실성이 국내 주택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경계와 대응 전략 필요

김성환(연구위원 · shkim@cerik.re.kr)

## 산업연관표로 본 2020~2022년 건설업생산비용구조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 영업잉여 비중 축소가 두드러져 -

- 산업연관표는 작성 형식에 따라 투입산출표와 공급사용표로 구분됨.
  - 투입산출표는 하나의 산업에서 하나의 상품을 생산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상품×상품” 행렬 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열을 구성하는 벡터는 해당 상품의 투입구조를 나타냄,
  - 공급사용표는 “상품×산업” 행렬 형태로 작성되는데, 공급표와 구별되는 사용표의 열을 구성하는 벡터는 중간투입부문과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윤(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국가에 대한 세금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부문으로 구분되는, 해당 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지출한 생산 비용을 나타냄.

### ■ 통합대분류에 의한 사용표 비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업의 총투입 금액에서 중간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고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비용의 비중은 감소했음.
  - 총투입금액에서 중간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8.8%에서 2021년 60.2% 2022년 61.4%로 증가한 반면, 임금, 이윤, 세금의 몫으로 지급하는 비용의 비중은 2020년의 41.2%에서 2021년 39.9%, 2022년 38.7%로 감소함.
-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비용 중에서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이 건설업의 총투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등의 비중은 감소했음.
  - 생산에 대해 국가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에서 정부 보조금을 뺀 금액의 비중은 2020년 0.16%에서 2021년 0.18% 2022년 0.26%로 증가했음.
  -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건설업의 총투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3.3%, 2021년 33.4%, 2022년 32.9%; 영업잉여의 비중은 2020년 5.6%, 2021년 4.2%, 2022년 3.4%;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2020년 2.14%, 2021년 2.11%, 2022년 2.06%였음.
- 중간투입비용은 상품별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일부 상품을 중간투입물로 투입하는 비용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일부 상품의 투입 비중은 감소했음.
  - 건설업 중간투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섯 가지 상품은 2020년에는 비금속광물제품(9.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8.42%), 금속가공제품(7.54%), 1차 금속제품(6.90%),

전기장비(5.51%); 2021년에는 비금속광물제품(9.45%), 1차 금속제품(8.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8.23%), 금속가공제품(7.50%), 전기장비(5.59%); 2022년에는 비금속광물제품(9.55%), 1차 금속제품(8.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8.38%), 금속가공제품(7.42%), 전기장비(5.95%)임.

- 1차 금속제품(2020년 6.90%, 2021년 8.68%, 2022년 8.63%), 석탄 및 석유제품(2020년 1.06%, 2021년 1.25%, 2022년 1.67%), 목재 및 종이, 인쇄(2020년 2.22%, 2021년 2.53%, 2022년 2.58%) 등의 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음.

<표 1> 통합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의 사용표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별 중간투입물 1~5위	비금속광물제품(9.50%)	비금속광물제품(9.45%)	비금속광물제품(9.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8.42%)	1차 금속제품(8.68%)	1차 금속제품(8.63%)
	금속가공제품(7.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8.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8.38%)
	1차 금속제품(6.90%)	금속가공제품(7.50%)	금속가공제품(7.42%)
	전기장비(5.51%)	전기장비(5.59%)	전기장비(5.65%)
중간투입계	58.83%	60.15%	61.35%
피용자보수	33.30%	33.35%	32.90%
영업잉여	5.57%	4.21%	3.44%
고정자본소모	2.14%	2.11%	2.06%
기타생산세(보조금공제)	0.16%	0.18%	0.26%
부가가치계	41.17%	39.85%	38.65%
총투입계	100.00%	100.00%	10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통합중분류에 의한 사용표 비교

● 통합중분류는 건설업을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과 ‘토목 건설업’ 으로 구분하는데, ‘토목 건설업’ 에 비해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의 비용 변화 구조가 두드러짐.

-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총투입금액에서 중간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9.5%에서 2021년 61.2% 2022년 62.5%로 증가한 반면,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의 비중은 2020년의 40.5%에서 2021년 38.8%, 2022년 37.5%로 감소함.
- ‘토목 건설업’ 총투입금액에서 중간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7.3%에서 2021년 57.3% 2022년 57.7%로 증가한 반면,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의 비중은 2020년

의 42.7%에서 2021년 42.7%, 2022년 42.3%로 감소함.

-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비용의 비중도 ‘토목 건설업’에 비해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에서 변화가 더 두드러짐.
  -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의 총투입금액에서 영업잉여의 비중은 2020년 5.5%, 2021년 3.6%, 2022년 2.8%; 임금 비중은 2020년 33.0%, 2021년 33.2%, 2022년 32.7%;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2020년 1.9%, 2021년 1.8%, 2022년 1.7%; 생산세의 비중은 2020년 0.2%, 2021년 0.2%, 2022년 0.3%였음.
  - ‘토목 건설업’의 총투입금액에서 영업잉여의 비중은 2020년 5.8%, 2021년 6.0%, 2022년 5.5%; 임금 비중은 2020년 34.1%, 2021년 33.7%, 2022년 33.4%;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2020년 2.7%, 2021년 2.9%, 2022년 3.2%; 생산세의 비중은 2020년 0.1%, 2021년 0.1%, 2022년 0.3%였음.
- 중간투입비용의 상품별 구조도 ‘토목 건설업’에 비해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에서 변화가 더 두드러짐.
  -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중간투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섯 가지 상품은 2020년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8.58%), 금속가공제품(8.21%),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7.06%), 철강1차제품(5.93%), 플라스틱(5.55%); 2021년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8.71%), 금속가공제품(8.19%), 철강1차제품(7.66%),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7.10%), 플라스틱(5.32%); 2022년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8.92%), 금속가공제품(8.07%), 철강1차제품(7.76%),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7.31%), 플라스틱 그리고 전기장비(5.03%)임.
  - ‘토목 건설업’ 중간투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섯 가지 상품은 2020년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10.03%), 전기장비(8.43%), 철강1차제품(8.31%),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7.34%), 금속가공제품(5.86%); 2021년에는 철강1차제품(10.2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9.70%), 전기장비(8.45%),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7.02%), 금속가공제품(5.56%); 2022년에는 철강1차제품(9.9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9.55%), 전기장비(8.95%),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6.96%), 금속가공제품(5.28%)임.
  - 2020~2022년 기간 중 대분류에서 투입 비중이 증가했던 1차 금속제품과 석탄 및 석유제품은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에 비해 ‘토목 건설업’에서 증가세 두드러졌음; 철강1차제품(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2020년 5.93%, 2021년 7.66%, 2022년 7.76%; 토목 건설업: 2020년 8.31%, 2021년 10.21%, 2022년 9.97%), 석탄 및 석유제품(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 2020년 0.69%, 2021년 0.86%, 2022년 1.21%; 토목건설업: 2020년 1.98%, 2021년 2.35%, 2022년 3.18%).

&lt;표 2&gt; 통합중분류에 따른 건설업의 사용표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업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별 중간투입물 1~5위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8.58%)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8.71%)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8.92%)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10.03%)	철강1차제품 (10.21%)	철강1차제품 (9.97%)
	금속가공제품( 8.21%)	금속가공제품( 8.19%)	금속가공제품( 8.07%)	전기장비 (8.43%)	기타 비금속광물제 품(9.70%)	기타 비금속광물제 품(9.55%)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7.06%)	철강1차제품 (7.66%)	철강1차제품 (7.76%)	철강1차제품 (8.31%)	전기장비 (8.45%)	전기장비 (8.95%)
	철강1차제품(5 .93%)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7.10%)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7.31%)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7.34%)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7.02%)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6.96%)
	플라스틱제품 (5.55%)	플라스틱제품 (5.32%)	플라스틱제품 (5.03%)	금속가공제품 (5.86%)	금속가공제품 (5.56%)	금속가공제품 (5.28%)
중간투입계	59.45%	61.17%	62.47%	57.29%	57.25%	57.70%
피용자보수	33.00%	33.23%	32.73%	34.05%	33.71%	33.44%
영업잉여	5.45%	3.58%	2.83%	5.84%	5.99%	5.45%
고정자본소모	1.91%	1.82%	1.72%	2.72%	2.92%	3.16%
기타생산세(보조금공제)	0.19%	0.19%	0.26%	0.10%	0.13%	0.25%
부가가치계	40.55%	38.83%	37.53%	42.71%	42.75%	42.30%
총투입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시사점

- 2020~2022년 기간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서비스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재원으로 일시적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음.
  - 국내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백 1만 6천명, 2021년 2백 9만명, 2022년 2백 12만 3천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sup>3)</sup>, 건설업 투입비용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음.

3) 참조 : 통계청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 2020~2022년 기간 동안 건설업, 특히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업의 영업잉여 비중 감소가 두드러짐.
  -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의 비중이 줄었음에도 일부 중간투입재에 대한 지출 비용의 증가로 인해 영업잉여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음.
  - 철강석, 석탄, 석유 등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자원과 연관된 중간투입재인 철강1차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의 중간투입재에 지출한 비용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음.
  - 2020~2022년 기간은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일부분만 반영됐고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달러화 강세의 영향은 일부만 반영됐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2023년 이후 국내 건설업의 영업잉여 비중 축소를 심화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1)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 ◎ 지난 1개월('24.12.21.~'25.1.19.) 간 국회는 총 793건의 입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법률안은 총 39개의 법안이 발의됨.
  - 계속된 혼선 정국 속 통상 건설산업 관련 입법보다는 적은 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법안 또한 발의됨.
  - 대표적으로 계속된 입법 시도인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공기연장비용 지급 합리화, 건설사업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 등이 그러함.

## 이슈 1: 대표적 공공공사 불공정사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비용...입법 보완되나

- ◎ '78년 정부예산 편성 편의도모 차원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 분야에 적용된 장기계속공사는 세계 유일의 계약 방식으로 그간 공공공사의 대표적 불공정 계약구조로 오랫동안 지적된 사항임.
  - 지난 '23년 국회예산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임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계속비 사업은 헌법상 재정 제도이고 「국가재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불합리를 제기함.
  - 실제 다년차 공사의 장기계속계약은 필연적으로 공기연장 발생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공기연장 청구의 절차적 복잡성과 예산 재협의 등으로 발주청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기연장비용 청구 승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에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가 그간 계속됨.
- ◎ 허나, 정부는 예산 운용의 탄력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이후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100%인 상황(계속비계약 비중 0%)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 구속력 부정의 판결(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랫동안 이어진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 피해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 이에 국회는 지난 20대와 21대 각각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구속력 인정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총 4건)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국회 예산심의원권 침해주장에 따라 입법 불비로 이어져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음.
  -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에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촉구를 하였으나, 계약당사자 간 책임 혼재 시 균분 부담 등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외 구체적 개선은 불비한 상황임.

- ◎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변경이 계약 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한 입법안이 발의됨(의안번호 제7070호,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중시한 예산당국의 소극적 태도는 이해되나, 전 세계 유일의 불합리한 계약구조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비용의 합리적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번에만큼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이와 더불어 공기연장 비용 미지급·최소 지급을 위한 발주청의 여러 행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함께 수반되기를 희망함.
  - 일례로 △실제 공사기간보다 연차 기간을 최대한 늘려 과도한 계약체결(적정공기를 초과한 공사 기간 설정), △차수 내 공기연장 미인정에 따른 연장되는 기간만큼 차기 차수 물량이월, △공기연장 비용 회피를 위해 후행 계약을 조기 발주하여 선행 계약과 중복 진행 등의 문제 개선이 필요함.

## 이슈 2: 주휴수당 지급 의무 계약상대자에게 떠넘기나.

- ◎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을 경우, 주휴일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뜻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법적 임금임.
  - 지난 2018년 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건설업에도 법정 주휴 시간 지급 요구가 확대됨.
- ◎ 허나, 건설업의 경우 그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게 그 지급을 전가하는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노무비 내 주휴수당에 대한 계상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공사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 작성 시 주휴수당을 예정가격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으나, 구체적 산정기준이 불비하여 현재까지 예정가격 내 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자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잠정금액(P.S) 형태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를 지급하고 있어 발주청별 역차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달청의 경우 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제도 마련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 결국 건설산업의 주휴수당에 대한 현재 상황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지급이 법적 의무로 부여된 상황이나, 대다수 발주자(공공·민간)의 경우 이를 도급금액 계상에서 외면하고 있고, 이의 책임만 계약상대자(원·하도급자)에게 부여된 상황으로 사실상 도급계약자 일방의 피해(금전적 손실 또는 임금 체불에 따른 노동자 손해·행정 제재)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7074호,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도급자인 시공사에게 주휴수당 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발주자의 관련된 적정 비용 산정 의무는 부여치 않아 향후 분쟁 및 불필요한 피해 가중이 예상됨.

- 이에 입법 소위 등 법안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체계적 지급을 위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무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적정한 해당 비용 산정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합리적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 또한, 조달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합리적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공공사를 비롯한 민간공사에까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편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함. 이미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0년 마련한 주휴수당 산정기준을 올해 고도화하는 점을 정면교사(正面敎師) 삼아야 할 것임.

### 이슈 3: 공공공사 발주 오류 해결의 첫 단추...계속하여 고도화하여야

- ◎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 위탁발주와 발주청 자체조달이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건설공사는 개별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약서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 현장설명 등 여러 입찰 부속 도서 또한 계약의 일부이기에 해당 부속 도서까지 올바른 관계 법령 해석에 기반한 발주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임.
- ◎ 허나, 종종 공공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청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오류 또는 부당한 계약이 포함된 내용이 발주되고 이로 인한 재공공 또는 잘못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 중임.
  - 대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과 다른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발주 또는 당해 공사와 적합한 업종을 잘못 선택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그러함.
  -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한 적정한 공사기간을 고려치 않은 발주,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위반한 과소 예정가격 산정,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순공사원가 이상 낙찰자 결정 의무 위배 등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청의 책무를 위반한 발주 또한 빈번하게 발생 중임.
  - 일례로 우리원이 지난 2020년 3월 이후 작년 10월까지 순공사원가 이상 낙찰자 결정 의무 또는 순공사원가 공개 의무를 위배한 국가계약 대상 공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약 1만여 건의 해당 공사(적격심사 대상 공사)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봐도 그러함.
- ◎ 이는 대부분 개별 발주청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관계 법령 숙지 부족, 예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에 의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며, 그 피해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이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는 조달청 위탁발주뿐만 아니라 발주청별 자체발주 사항까지 조달청이 입찰공고 및 계약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 안내를 시행하도록 하는 「전자조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7493호,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함.
- ◎ 해당 법안이 빈번한 공공공사 발주 오류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번 입법안을 계기로 불필요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함.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4.12.21.~'25.1.19)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933호(염태영 의원 등 13인)] ('24.12.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 변경 양산과 더불어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등)</li> </ul> </li> </ul>
「건설기술 진흥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942호(서범수 의원 등 11인)] ('24.12.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5조 및 제6조)</li> <li>- (제안방향②) 건설의 구조적 안전성 향상을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 위반 시 시정조치(안 제48조 및 제80조)</li> </ul> </li> </ul>
「주택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943호(서범수 의원 등 10인)] ('24.12.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 하자 점검 및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방문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입주예정자의 경우 시공품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전문가 및 전문업체 등 외부인의 동행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에 제도 보완 필요</li> <li>- (제안이유②)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하자요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하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실 등 사전방문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가 사전방문 결과나 실시현황 등을 파악하여 하자 여부의 판단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필요성 존재</li> <li>- (제안이유③) 사전방문제도가 주로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 통일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마련 및 사전방문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성 존재</li> <li>- (제안방향) 사전방문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 제48조의2제1항·제5항 및 동조 제6항 신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대동 허용</li> <li>·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의무적 제출</li> <li>·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사전방문 모니터링 실시</li> </ul> </li> </ul> </li> </ul>
「국가 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949호(이중욱 의원 등 10인)] ('24.12.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영향을 받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관행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사 등을 재위탁한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동제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p> <p>※ (참고)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부당특약)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p> <p>- (제안방향)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 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 등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p>
「교육 시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013호(고민정 의원 등 13인)] (‘24.12.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시설법」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이나,</li> <li>-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치함으로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완 필요</li> <li>- (제안방향)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li> </ul> </li> </ul>
「국가 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070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4.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안 제19조)</li> </ul> </li> </ul>
「건설산업 기본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074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4.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할 필요</li> <li>- (제안방향)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2항)</li> </ul> </li> </ul>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092호(한준호 의원 등 13인)] (‘24.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107호(김준혁 의원 등 11인)] ('24.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나,</li> <li>-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은 보다 자율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규정(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li> </ul> </li> </ul>
「건설기계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125호(서범수 의원 등 12인)] ('24.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li> <li>-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 내포</li> <li>- (제안방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및 검사 총괄기관 지정을 명확히 하고, 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li> <li>·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감독 등을 규정(안 제6장의2 신설)</li> <li>·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등을 건설기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기관은 조사·점검결과 및 사고 예방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 예방대책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 마련(안 제35조)</li> </ul> </li> </ul> </li> </ul>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138호(윤영석 의원 등 11인)] ('24.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건축 관계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관계 전문분야가 분리발주 될수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별 종합조정 역할 부재로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축물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재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 유발과 더불어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 발생 중</li> <li>· 또한, 분리발주에 따른 분야별 업무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관계자 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위해 종합조정자의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고려 필요</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b>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 유도</li> <li>· 발주자가 전기, 소방 등 분리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등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7호의2 신설)</li> <li>·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전기·소방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업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등 마련(안 제67조의2 신설)</li> </ul>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7151호(이종배 의원 등 10인)] (‘24.12.31.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li> <li>-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효율성이 낮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제38조제1항)</li> </ul> </li> </ul>
「하도급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7163호(민병덕 의원 등 12인)] (‘24.12.31.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도급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직불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li> <li>- 원도급자가 3자 합의에 의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하도급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제1항)</li> </ul> </li> </ul>
「공항시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7168호(민형배 의원 등 13인)] (‘24.12.31.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재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공항 장비와 설치물 관련 규정이 명시되고 있고, 해당 내용에는 평상시 구조적 통합성·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규정 중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는 이와 달라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 규정 위반 지적 제기 중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참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21년 공항설계지침, 미국연방항공청(FAA)도 유사 규정 중</li> <li>- <b>(제안방향)</b>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안 제24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하도급법」</p> <p><b>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192호(민병덕 의원 등 12인)] ('25.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최대 4회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li> <li>- 원도급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도급자 명의를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하도급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3조의2)</li> </ul> </li> </ul>
<p>「건축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201호(박성훈 의원 등 11인)] ('25.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일선 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 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대응에는 한계 내포</li> <li>- (제안방향)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통해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안 제38조의11)</li> </ul> </li> </ul>
<p>「공항 시설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213호(김예지 의원 등 12인)] ('25.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사설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방위각제공사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li> </ul> </li> </ul>
<p>「공항 시설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223호(이해민 의원 등 14인)] ('25.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구역 밖에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항공장애물 관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 신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li> <li>- (제안방향②)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21호 및 제34조의3 신설 등)</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정보통신 공사업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규제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277호(최형두 의원 등 10인)] (‘25.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 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 발생</li> <li>- (제안이유②)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li> <li>- (제안방향)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등)</li> </ul> </li> </ul>
「정보통신 공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299호(최형두 의원 등 10인)] (‘25.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고 공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로서 사고 발생 시 금전 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 부여(안 제35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li> </ul> </li> </ul>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300호(박희승 의원 등 13인)] (‘25.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li> <li>-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li> <li>- 하지만,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li> </ul> </li> </ul>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322호(박지혜 의원 등 15인)] (‘25.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로 경제 타당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기에</li> <li>-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 평가 필요</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 (참고) 기후위기에 대응치 않을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3%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GDP)가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방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안 제38조제7항 및 제50조제6항 신설)</li> </ul>
<p>「건설산업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326호(서범수 의원 등 12인)] (‘25.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그간 턱기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에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와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li> </ul> </li> </ul>
<p>「건설기술진흥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327호(서범수 의원 등 13인)] (‘25.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 업무와 단순한 지원 업무만을 수행 중인 상황</li> <li>-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li> <li>- (제안이유②) 최근 신공항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 :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 미흡</li> <li>- (제안방향)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9조)</li> </ul> </li> </ul>
<p>「건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372호(권영진 의원 등 11인)] (‘25.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건축주에 예측되어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건축주로부터 예측을 방지하고 건설한 시공을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와 같이 부실 시공·감리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 필요</li> <li>- (제안방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제25조제2항)</li> </ul> </li> </ul>
<p>「상생협력법」</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373호(김종민 의원 등 10인)] (‘25.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기에 개선 필요</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방향)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법 적용으로 확대(안 제25조제5항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384호(권영진 의원 등 10인)] (‘25.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6조제3항 신설)</li> </ul> </li> </ul>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405호(김영호 의원 등 10인)] (‘25.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방지를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 중</li> <li>-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사례) 서울 내 대표적 철도 재정사업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교통소의 지역인 서울 강북권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적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일을 훌쩍 넘겨 지연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통과</li> </ul> </li> <li>- (제안방향)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미구분(안 제38조제6항 신설)</li> </ul> </li> </ul>
「지방 공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423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5.1.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역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고 있어 1년 이상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신설)</li> </ul> </li> </ul>
「공공주택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433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5.1.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7423호)와 제안이유가 동일</li> <li>- (제안방향)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검토 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의2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전자조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493호(진성준 의원 등 15인)] (‘25.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해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 적극적 관리·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 규정(안 제16조제4항 신설)</li> </ul> </li> </ul>
<p>「주택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493호(진성준 의원 등 15인)] (‘25.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 품질 확보 및 구조변경,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 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 필요</li> <li>- (제안방향①)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li> <li>- (제안방향②)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li> <li>- (제안방향③) 건폐율 및 용적을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안 제51조 및 제53조)</li> </ul> </li> </ul>
<p>「시설물안전법」</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558호(윤재욱 의원 등 10인)] (‘25.1.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하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안 제26조제3항 등)</li> </ul> </li> </ul>
<p>「국민체육진흥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572호(송기헌 의원 등 10인)] (‘25.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에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li> <li>- (제안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575호(송기현 의원 등 11인)] (25.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li> <li>- (제안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에게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등)</li> </ul> </li> </ul>
「민간투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582호(이인선 의원 등 13인)] (25.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li> <li>- (제안방향)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35조의2 신설 등)</li> </ul> </li> </ul>
「정보통신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594호(이해민 의원 등 10인)] (25.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 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발주자가 수급인(원도급자)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li> </ul> </li> </ul>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7603호(정태호 의원 등 10인)] (25.1.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여(안 제38조제6항 신설)</li> </ul> </li> </ul>